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72

발의연월일: 2021. 8. 17.

발 의 자:이은주・심상정・류호정

배진교 • 조오섭 • 강은미

장혜영 · 김민철 · 이소영

오영환 · 김영배 · 용혜인

장경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자격으로 만 25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 제한 규정은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봉쇄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국민주권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성, 치자의 민주적 대표성임.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피선거권(공무담임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을위한 가장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명백하게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거권자이기도 한 국민들에 대하여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입법 재량에 벗어나 는 것임.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구성의 핵심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歲 이상의"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歲 이상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② 25歲 이상의	제16조(피선거권) ② <u>국회의원의</u>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
있다.	<u>ㄴ</u> ,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③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u>25歲 이상의</u> 國民은 그 地方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
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	하는
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	
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